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- 978호

인천광역시서구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7년 11월 3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**인천광역시서구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규칙
일부 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****1. 개정이유**

도로굴착사업을 심의하는 인천광역시서구도로관리심의회의 운영규칙을 정비하여 시·구간 도로유지관리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잦은 도로굴착을 미연에 방지하여 도로유지관리 기능을 강화코자 함

2. 주요내용

- 규칙명을 “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”으로 함.
-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유지관리의 도로폭을 현행 “도로폭 20미터 이상”에서 “도로폭 20미터 초과”로 함.
- 심의회의 간사를 “건설행정담당”에서 “도로굴착업무담당”으로 함.
- 심의회의 기능 중 “도로굴착관련 중복굴착 시행방지 및 조정”기능을 추가함.
-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13에 의거 심의회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.

3. 의견제출

이 일부개정규칙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참조 : 건설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(560-4527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

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

자 치 법 규 명	인천광역시서구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개 정 이 유	○ 『도로법시행령』 제24조의13에 따라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, 『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』 일부개정됨에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규칙을 우리구 자체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주 요 내 용	○ 「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」에 근거 인천광역시와 군·구 간 도로유지관리 기준 변경에 따른 심의기준(대상) 개정 (안 제3조) : 도로폭20미터이상을 도로폭20미터초과로 함. ○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마련 (안 제13조) ○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기능 보강 (안 제5조) : 도로굴착관련 중복굴착 시행방지 및 조정 사항 신설
개 정 안	“별 지 참 조”
산·구조문대비표	“별 지 참 조”
관 계 법 령 발 체	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13(수당)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7조
관 련 사 업 계 획	“해 당 없 음”
예 산 수 반 사 항	심의위원 참석수당 1,800,000원
기 타 참 고 사 항	“해 당 없 음”

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 호

인천광역시서구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인천광역시서구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서구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규칙” 을 “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” 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도로폭 20미터 이상”을 “도로폭 20미터 초과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건설행정담당”을 “토목굴착업무담당”으로 한다.

제5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도로굴착관련 중복굴착 시행방지 및 조정

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수당)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생략	제1조(목적) 현행과 같음
제2조(적용범위) 생략	제2조(적용범위) 현행과 같음
제3조(심의조정대상) 심의회의 심의·조정 대상은 도로폭 20미터 이상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굴착공사를 제외한 모든 도로의 굴착공사로 한다. 다만, 도로폭 20미터 이상 아스팔트 포장공사 굴착공사 중 횡단 및 보도굴착은 포함한다.	제3조(심의조정대상) _____ _____도로폭 20미터 초과_____ _____ _____도로폭 20미터 초과_____ _____.
제4조(구성)	제4조 (구성)
① ~ ③ 생략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간사는 건설행정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담당자로 한다.	④_____도로굴착업무담당으로_____ _____.
제5조(기능)	제5조(기능)
1.~5. 생략	1.~5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6. 도로굴착관련 중복굴착 시행방지 및 조정
7. (종전의 제6호)	7. (현행과 같음)
< 신 설 >	제13조(수당)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다.
제14조 (종전의 제13조)	제14조 (현행과 같음)

□ 관계법령 발췌

○ 도로법 제24조의13

제24조의13 (수당)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○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(2007-03-29 개정)

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

도로과 1 도로구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20m이하인 도로(도로폭 20m이하인 도로와 연결되는 교차점 광장 포함)에 관한 다음의 권한

- 가. 노선인정 공고
 - 나. 노선의 폐지 및 변경
 - 다.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
 - 라.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
(도로부속물, 비포장도로, 지하차도,
고가차도, 교량, 터널 등)
 - 마. 도로구역의 결정
 - 바. 도로의 사용과 폐지
 - 자.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
 - 차. 부대공사의 시행
 - 이하생략
- 도로과 2 도로폭원에 관계없이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
- 가. 도로 예정지 점용 허가
 - 나. 도로점용(굴착, 공작물 포함)허가
 - 다. 도로점용 공사의 대행
 - 라. 도로점용료 징수
 - 마. 도로점용자의 원상복구 면제